

2022년 하반기 충청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모집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2022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8일

충청북도지사

I

사업개요

- 사업명 : 2022년 충청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 신청기간 : 2022. 7. 18.(월) ~ 8. 1.(월) 18:00까지
- 신청자격 : 유급근로자(자체고용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 지원인원 : 1인 이상 50인 이하 (예산규모를 감안하여 지원)
-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구 분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지원기간	(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기산방법	(인증)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3년

※ 지원기간 중 인증·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7. 지원비율

구 분	예 비	인 증
일반근로자	50%	40% +20% (계속고용시)
취약계층	50+20%	40%+20% +20% (계속고용시)

※ 계속고용이란 채용일로부터 만24개월을 고용한 경우로, 25개월이 되는 달부터 인센티브 적용

II

신규 참여기업

1. 참여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충청북도지사가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신청 및 선정 가능

2. 참여제외 대상

- ① 유급근로자(자체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여부와 임금지급사실, 최저임금 이상 지급여부 등 확인 후 부적합한 기업
- ②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 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 ③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이외의 참여기업에 대한 사회서비스(사회공헌실적)제공 실적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충청북도 심사위원회에서 정함. 다만, 특정취약계층(중증장애인*)을 총 근로자의 20%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여부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기준에 따른 중증장애인
- ④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30%’에 미달하는 기업
 - 다만, 사회적목적 유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자리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50%’에 미달할 경우 참여 제외

- ⑤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 단, 회사사정에 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
- ※ 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를 고용 조정(감원)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 ⑥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 다만, 지원이 종료된 인증 사회적기업 중 최대지원기간 종료 후 3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창출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사회적가치 지표’를 활용하여 창출한 사회적가치 수준이 ‘탁월 또는 우수’ 하다고 확인된 기업은 재참여 가능
-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사업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 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보미, 지역사회투자사업 등)
- 단, 사업참여기업이 바우처 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와 가사 간병서비스 등의 사업을 바우처가 아닌 유료사업으로 수행하는 경우 다른 사업과 유료사업에 한하여 참여가능
- ⑧ 지속적, 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 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⑨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⑩ 충청북도지사가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 기업 매출의 대부분이 정부조달 또는 위탁사업 등을 통해 발생하는 청소 등의 업종은 일자리 참여기업으로 선정 최소화

3. 제출서류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

- ① 사업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②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 ③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회서비스 제공 내역서 [서식2-1]
 - 관련 증빙자료(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서식2-2] 등)
- ④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4호의2서식]

⑤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 내용

(제출불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의 ID 제출로 갈음)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필수과정’ ('22. 1. 1. 신설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접수마감일 기준 1년 내 기존 e-러닝 이수도 인정)

-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⑥ 근로자 관련서류 (공고일 전월 기준)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확인서 등

※ ‘사회가치 측정 보고서’ 항목에 등록 (사회가치측정보고서는 제출 불요)

⑦ 유급근로자명부[서식1], 취약계층 증빙서류

- 통합정보시스템 ‘유급근로자명부’ 항목에 등록

※ 전체유급근로자 및 유급근로자명부의 근로자수는 재정지원사업 신청 당시 기준

III

재심사 참여기업

1. 참여대상

○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 참여기업 중 지원기간이 종료 되기 전에(종료 90일전부터) 계속지원을 신청한 기업

- 단, 최대지원기간 5년 이내인 기업

(예비 :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2년 / 인증 :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3년)

- 예비사회적기업이 최대지원기간 종료되기 전에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을 한 경우에는 계속지원을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음

2. 참여제외 대상

① 신규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제외 대상 기업

② “지원기간 중” 임금체불 발생 기업

③ 직전 사업보고서 미제출 기업

※ 재심사 탈락된 기업은 그 후 공모사업에 참여 가능

※ 신규신청기업의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선정된 경우에는 종전 지원연차 다음 연차 지원 비율 적용

3. 제출서류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

- ① 사업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 ②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 ③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회서비스 제공 내역서 [서식2-1]
 - 관련 증빙자료(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서식2-2] 등)
- ④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4호 및 제4호의2서식]
- ⑤ 근로자 관련서류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확인서 등

※ ‘사회가치 측정 보고서’ 항목에 등록 (사회가치측정보고서는 제출 불요)
- ⑥ 유급근로자명부[서식1], 취약계층 증빙서류
 - 통합정보시스템 ‘유급근로자명부’ 항목에 등록

※ 전체유급근로자 및 유급근로자명부의 근로자수는 재정지원사업 신청 당시 기준

IV

재참여 참여기업

1. 참여대상

- 지원이 종료된 인증사회적기업 중 최대지원기간 종료 후 3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창출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사회적 가치지표’를 활용하여 창출한 사회가치 수준이 ‘탁월 또는 우수’ 하다고 확인된 기업

2. 참여제외 대상 : 신규 참여제외 대상과 동일

3. 지원방식 : 인증 사회적기업 1~3년차 지원 방식 적용

- ※ 재참여 1년차에는 종전 일자리창출을 통해 참여근로자로 채용했던 근로자로서 계속 고용중인 자는 참여불가
- ※ 재참여 후 다음연도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는 인증 재심사 지원 방식과 동일

4. 제출서류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

- ① 사업신청서 [별지 제2호의2서식]
- ②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 ③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회서비스 제공 내역서 [서식2-1]
 - 관련 증빙자료(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서식2-2] 등)

④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4호의2서식]

⑤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 내용

(제출불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의 ID 제출로 갈음)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필수과정’ ('22 1. 1. 신설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접수마감일 기준 1년 내 기존 e-러닝 이수도 인정)

-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⑥ 근로자 관련서류 (공고일 전월 기준)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확인서 등

※ ‘사회가치 측정 보고서’ 항목에 등록 (사회가치측정보고서는 제출 불요)

⑦ 유급근로자명부[서식1], 취약계층 증빙서류

- 통합정보시스템 ‘유급근로자명부’ 항목에 등록

※ 전체유급근로자 및 유급근로자명부의 근로자수는 재정지원사업 신청 당시 기준

V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22. 7. 18.(월) ~ 8. 1.(월) 18:00까지

○ 마감일에는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 입력 요망

○ 온라인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반드시 <신청서 제출>을 눌러 처리해야함.

○ 신청기간 내 입력 완료된 접수만 인정

※ ‘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님.

2.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온라인 접수

○ 문의사항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 (☎1661-4006)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동의사항>

①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 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② 기업의 유급근로자 등의 확인을 위해 신청시 4대보험 가입증명 등의 자료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③ 근로자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 (스캔을 통한 전자화)

VI

심사 및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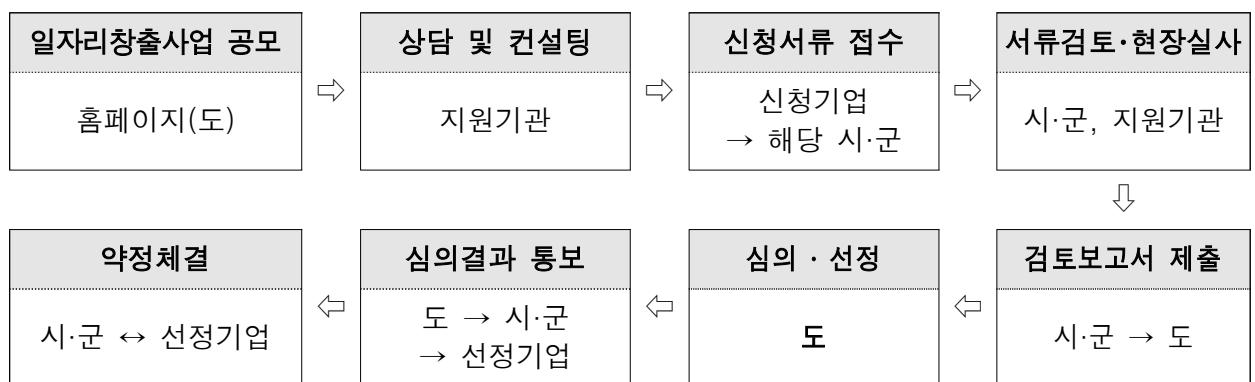
1. 심사방법 및 기준

- 심사방법 : 대면심사 ※ 필요시 서면심사 가능
 - 신청기업별 신청내용에 대한 2분 이내 브리핑 실시 및 질의 응답
 - 각 심사위원별 심사표를 작성하여 심사
- 심사기준 : 신규 참여기업과 재심사 참여기업을 구분하여 심사

심 사 기 준	세 부 내 용
사회적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 사회목적 재투자 • 전체 노동자 대비 취약계층 고용비율
고용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성과 •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견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성과 • 사업내용의 우수성
기업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운영 과정 및 제품의 혁신 노력
자율경영공시 여부 (재심사 참여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시 가점 부여

※ 심사결과 “평균 60점 미만” 기업과 “심사위원회 미출석” 기업은 최종 지원 제외

2. 선정절차



3. 선정결과 : 충청북도 홈페이지 게시 및 시·군 통보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한 내 관련 서류를 등록(제출)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신청 기업에 있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충청북도 고유의 권한이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 일체는 비공개로 합니다.
- 심사를 위하여 신청한 제반 내용의 일체는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추후 해당 내용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금 환수 조치는 물론 민·형사 상 책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 되며, 모든 재정 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형사처벌 되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이 부과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22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을 따르며, 기타 문의사항은 충청북도 및 관할 시·군의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사협)충북사회적 경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내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충청북도	사회적경제과	220-2573	영동군	농촌신활력과	740-3696
청주시	일자리정책과	201-1384	증평군	행정과	835-3254
충주시	경제기업과	850-6012	진천군	경제과	539-3334
제천시	일자리경제과	641-6613	괴산군	경제과	830-3322
보은군	경제전략과	540-3539	음성군	경제과	871-3636
옥천군	경제과	730-3364	단양군	지역경제과	420-2435

- 상담 및 컨설팅

기관명	전화번호
(사협)충북사회적경제센터	(043)222-9001

【별표 1】 취약계층의 범위

취약계층의 범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간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 취약계층의 판단기준(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판단기준과 동일)은 별표2 참고

【별표 2】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제1호(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 확인방법

- ① 가구 월평균 소득: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소득
- * 가구 월평균 소득은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
 - 소득금액증명(원)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것으로 판단하되,
소득금액증명(원) 외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소득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 ②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공표된 '직전년도 3/4분기'의 월평균 소득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21년 3/4분기 가구 월평균소득	2,657,716	4,187,663	6,194,182	7,112,173	7,218,243
60%	1,594,629	2,512,597	3,716,509	4,267,303	4,330,945

제2호(고령자) 만 55세 이상인 자

☞ 확인방법 :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3호(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확인방법 :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제4호(성매매피해자)

-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to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확인방법 :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제5호(청년·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 청년: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경력단절여성 등: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 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참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 확인방법: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및 수료증(이수증) 등

* 장려금 지급대상자가 불분명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협조요청 하여 대상자 확인

제6호(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 확인방법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7호(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확인방법 :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제8호(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확인방법 :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제9호(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 확인방법 :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 미취득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F-6

제10호(갱생보호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확인방법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제11호(범죄구조피해자)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확인방법 :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5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 증명서

제12호(기타)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확인방법 :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 조회

* 고용노동부 워크넷이나 민간 취업알선기관(직업소개소 포함)을 통해서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구직등록일로부터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 조회 결과 취득기록이 없는 경우에 해당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확인방법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확인방법 :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

☞ 확인방법 :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마. 노숙인

☞ 확인방법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주천서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 확인방법 :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 (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 확인방법 :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이상 또는 18세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로능력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확인방법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통·반장 확인서(사실흔 관계 확인용)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고서, 장애인 등록증,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통·반장의 확인서 등)

자. 난민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은 자)

차. 보호종료 아동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 중 만 34세 이하인 자

☞ 확인방법 : 보호종료확인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에서 발급(보건복지부에서 자립수당 지급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시 발급 중)

카. 청소년쉼터에 입퇴소한 자

- 청소년쉼터에서 1년이상 보호한 청소년

☞ 확인방법 : 청소년쉼터 입소기간 확인서 등

타.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은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 등급), 학교폭력 피해자, 가정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 중증질환자 등을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인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18.7.17. 시행)에 따라 자퇴, 미진학, 재적 등 처분을 받은 청소년

☞ 확인방법 : 가족관계 증명서, 해당기관 확인서, 주민센터 확인서류, 신용등급조회서류 등 객관적 확인서류 또는 서비스 제공 연계기관 확인서류로 인정 가능

- *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관련 경과규정: 이 지침의 시행일 현재 '금융채무 불이행자 또는 저신용자'에 해당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된 참여근로자는 향후 계속고용기간동안은 취약계층으로 인정함. 단, 사회적 기업 인증 심사 시에는 동 근로자를 취약계층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을 안내하기 바람
- * 각 개인별로 취약계층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가 위에 예시된 서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사안별로 적합여부를 판단
- *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는 2011년 이전에 채용된 인력에 해당되며 2012년 부터는 취약계층으로 신규승인 불가

*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었으나 동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취약계층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해당 사회적기업에서 퇴직시까지 취약계층으로 인정

* 채용당시 취약계층이 아니었으나 취약계층으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신분변동일을 기준으로 취약계층 신분을 인정. 단, 인증 또는 취업당시에는 '저소득'자가 아니었으나, 해당 사회적기업에 취업하거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이후 '저소득'자가 된 경우는 취약계층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예시) 일반근로자로 '18.5.1. 고용된 자가 '18.7.15. 고령자가 된 경우 '18.7.15. 부터 취약계층으로 인정

【별표 3】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및 고용유지조치

-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대분류	중분류	내용설명
2.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이직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 (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p>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p> <p>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 -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p> <p>③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 -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p> <p>-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급품 외 퇴직위로금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p> <p>④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하는 경우(아웃소싱 포함)</p> <p>⑤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 - 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p> <p>⑥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p> <p>⑦ 대량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사직 - 대량의 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이직하는 경우</p> <p>⑧ 결혼·군입대 등의 경우 퇴직하는 관행에 따라 이직(권고사직 포함) -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 하는 경우</p> <p>⑨ 이직 전 3월 이상 임금이 낮거나 근로시간 과다 - 이직 전 3월간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2시간(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인 경우에는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 되어 이직하는 경우</p> <p>⑩ 관례적·일상적인 명예퇴직 - 구체적 인원감축계획, 향후 인사상 불이익조치 예정, 인원감축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고 조치 없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요건·절차·기준에 따라 행하는 명예퇴직</p>

*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이 아닌 것으로 해석

* 예시 : ①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어 근로자가 징계를 피하기 위하여 사직하는 경우 ②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나 사업주의 권고에 의해 사직한 경우 등

- 고용유지조치(고용보험법 제21조)

-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는 것

【별표 4】 일자리창출 심사항목 (신규)

심사항목	배점		세부심사항목	배점
	총점	세부		
사회적 가치	30점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VI 3번 지표 중 외부운영의 사회적가치만 평가 	정성평가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목적 재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VI 6번 지표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노동자 대비 취약계층 고용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50% 이상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40~50% 미만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30~40% 미만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20~30% 미만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10~20% 미만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10% 미만 	10 8 6 4 2 1
고용성과	30점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80% 이상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60% 이상 80% 미만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40% 이상 60% 미만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20% 이상 40% 미만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20% 미만 	10 8 6 4 2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와의 협력·연계 정도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현황 - 고정매출처 및 매입처 확보 정도 - 공공구매 연계 여부 및 확대 가능성 등 	정성평가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출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매출액이 동종 업종 매출액 분포의 80% 이상 - 총 매출액이 동종 업종 매출액 분포의 60% 이상 80% 미만 - 총 매출액이 동종 업종 매출액 분포의 40% 이상 60% 미만 - 총 매출액이 동종 업종 매출액 분포의 20% 이상 40% 미만 - 총 매출액이 동종 업종 매출액 분포의 20% 미만 	10 8 6 4 2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견실성	30점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내용의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우수성 및 안정성, 성장가능성 - 사업계획의 충실햄 및 실현가능성 - 사업의 경쟁력 등 	정성평가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내용의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우수성 및 안정성, 성장가능성 - 사업계획의 충실햄 및 실현가능성 - 사업의 경쟁력 등 	
기업혁신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조직운영 과정, 제품의 혁신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인 조직운영과정에서 기존의 방식을 혁신 하려했던 노력 및 성과 - 생산·판매 과정에서 기존의 제품 및 서비스와 차별화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려 했던 노력 - 기존 시장에 제공되지 않는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한 내용의 유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VI 14번 지표 	정성평가

* 실적확인 : ① 사업보고서, ② 전년도 연말실적, ③ 신청 전월실적

* 사회적 가치지표(SVI)에 대한 내용은 「사회적가치지표 활용 매뉴얼」 참조

*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을 구분하여 심사

- ① 예비사회적기업 :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가능성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
- ② 사회적기업 : 수익창출 가능성, 참여근로자 고용유지 및 지속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

【별표 4】 일자리창출 심사항목 (재심사)

심사항목	배점		세부심사항목	배점
	총점	세부		
사회적 가치	35점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VI 3번 지표 중 외부운영의 사회적가치만 평가 	정성평가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목적 재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VI 6번 지표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심사 공고일 직전월 기준 월평균 취약계층 고용 비율(일자리 제공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30% 이상 (50% 이상)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25~30% 미만 (40~50% 미만)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20~25% 미만 (30~40% 미만)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15~20% 미만 (20~30% 미만)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10~15% 미만 (10~20% 미만)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10% 미만 	
고용성과	30점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80% 이상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60% 이상 80% 미만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40% 이상 60% 미만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20% 이상 40% 미만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20% 미만 	정성평가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와의 협력·연계 정도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현황 - 고정매출처 및 매입처 확보 정도 - 공공구매 연계 여부 및 확대 가능성 등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출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매출액이 동종 업종 매출액 분포의 80% 이상 - 총 매출액이 동종 업종 매출액 분포의 60% 이상 80% 미만 - 총 매출액이 동종 업종 매출액 분포의 40% 이상 60% 미만 - 총 매출액이 동종 업종 매출액 분포의 20% 이상 40% 미만 - 총 매출액이 동종 업종 매출액 분포의 20% 미만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견실성	35점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내용의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우수성 및 안정성, 성장가능성 - 사업계획의 충실햄 및 실현가능성 - 사업의 경쟁력 등 	정성평가
자율경영 공시 여부 (가점)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율경영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시 - 미공시 	

* 실적확인 : ① 사업보고서, ② 전년도 연말실적, ③ 신청 전월실적

* 사회적 가치지표(SVI)에 대한 내용은 「사회적가치지표 활용 매뉴얼」 참조

【별표 5】 사회서비스의 범위

사회서비스의 범위

-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의 보육서비스, 예술·관광 및 운동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서비스,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문화재 보존 및 활용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등 고용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P, Q, E, R, N, S, T, A 중 해당 업종(11개) 해당
 - 그 외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
- 사회서비스 업종 해당 여부 확인방법
 - ①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 시 신고한 업종코드 또는 ②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상 주 업종코드를 확인하여 아래 표에서 제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 상 업종코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
 -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고시·공고』 내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
 - * 기타 주 사업내용이 사회서비스에 해당하는지는 육성위에서 판단

분야	개요 및 예시	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코드 및 한글명
교육	정규교육기관, 성인교육, 기타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서비스업 * 예시: 교육기관 (유아초·중등·고등), 특수학교, 직업훈련	P 교육 서비스업(85) P85 교육 서비스업 P851 초등 교육기관 P8511 유아 교육기관 P8512 초등학교 P852 중등 교육기관 P8521 일반 중등 교육기관 P8522 특성화 고등학교 P8530 고등 교육기관 P854 특수학교, 외국인 학교 및 대안학교 P8541 특수학교 P8542 외국인 학교 P8543 대안학교 P8550 일반 교습학원 P856 기타 교육기관 P8561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P8562 예술 학원 P8563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P8564 사회교육시설 P8565 직원 훈련기관 P8566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P8569 그 외 기타 교육기관 P8570 교육 지원 서비스업
보육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양호 (보호), 교육 서비스 * 예시: 집단 보육시설 등	Q8721 보육시설 운영업

분야	개요 및 예시	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코드 및 한글명
보건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 * 예시: 의료(병원, 의원 등)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 Q86 보건업 Q8610 병원 Q8620 의원 Q8630 공중 보건 의료업 Q8690 기타 보건업
사회복지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특정 범주내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 복지시설 또는 비거주 복지시설 * 예시: 복지시설 (양로, 요양, 보육 등)	Q87 사회복지 서비스업 Q871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1 노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2 심신 장애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3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2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29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환경	고형 혹은 비고형의 각종 형태의 산업 또는 생활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활동, 환경 정화 및 복원 활동과 원료재생 활동 * 예시: 폐기물 처리업, 하수 · 폐수 처리업 등	E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37~39) E370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E3701 하수 및 폐수 처리업 E3702 분뇨 처리업 E381 폐기물 수집, 운반업 E3811 지정 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 E3812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E3813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 E382 폐기물 처리업 E3821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E3822 지정 폐기물 처리업 E3823 건설 폐기물 처리업 E3824 방사성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 E383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E3831 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E3832 비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E3900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문화예술 ·관광 및 운동 서비스	문화·예술 활동과 레저·관광 및 운동 등과 같이 삶의 질 증진에 관련한 서비스 * 예시: 여행보조서비스,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공연단체 등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N7521 여행사업 N7529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R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 R90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R9011 공연시설 운영업 R9012 공연단체 R9013 자영 예술가 R9019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R90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R9021 도서관, 기록보존소 및 독서실 운영업 R9022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R9023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R9029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R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R911 스포츠 서비스업 R9111 경기장 운영업 R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R9113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R9119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R912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분야	개요 및 예시	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코드 및 한글명
		R9121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R9122 오락장 운영업 R9123 수상오락 서비스업 R9129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사업시설의 청소, 방제 등을 포함한 사업시설 유지관리활동 * 예시: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건물· 산업설비 청소, 방제서비스)	N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4) N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N741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N742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N7421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N7422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N7430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고용 서비스 등 사업지원 서비스	고용지원서비스, 보안서비스, 사무보조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운영과 관련한 밀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예시: 사업지원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N75 사업지원 서비스업 N751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 N7511 고용 알선업 N7512 인력 공급업 N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탐정업은 적용 제외) N7531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N7532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N75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N7591 사무지원 서비스업 N7599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간병 및 개인 서비스	개인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예시: 개인 간병인, 이·미용, 욕탕, 마사지 등	S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S9610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S9611 이용 및 미용업 S9612 욕탕, 마사지 및 기타 신체관련 서비스업 S969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S9691 세탁업 S9692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가사지원	각종 가사담당자를 고용한 가구의 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 예시: 가사·산모· 육아도우미 등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97~98) T97 가구 내 고용활동 T9700 가구 내 고용활동 T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T981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생산 활동 T982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서비스 활동
산림 보전 및 관리	영림, 산림용 종자 및 묘목생산, 벌목 활동과 야생임산물 채취 및 임업관련 서비스 활동 * 단, 산림을 보전하는 내용의 서비스 사업만을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인정 * 예시: 임업 관련 서비스	A02 임업 A020 임업 A0201 영림업 A0202 벌목업 A0203 임산물 채취업 A0204 임업 관련 서비스업
기타	기타 육성위원회 검토를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 대상으로 인정받는 활동	

【별지 제1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신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신청 연차					
예비 사회적기업	지역형	<input type="checkbox"/> 예비 1년차	<input type="checkbox"/> 예비 2년차		
	부처형	<input type="checkbox"/> 예비 1년차	<input type="checkbox"/> 예비 2년차		
사회적기업	<input type="checkbox"/> 인증 1년차	<input type="checkbox"/> 인증 2년차	<input type="checkbox"/> 인증 3년차		
◆ 신청기업 개요					
기 업 명		인증(지정)번호			
대 표 자(주민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연락처(팩스)	Tel. (Fax.)		
전자메일주소		담당자 (연락처)	성명: (전화:)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input type="checkbox"/> 사단법인 <input type="checkbox"/> 재단법인 <input type="checkbox"/> 민법상 조합 <input type="checkbox"/> 주식회사 <input type="checkbox"/> 유한회사 <input type="checkbox"/> 합자조합 <input type="checkbox"/> 공익법인 <input type="checkbox"/> 비영리민간단체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법인 <input type="checkbox"/> 소비자생활협동조합 <input type="checkbox"/> 협동조합 <input type="checkbox"/> 사회적협동조합 <input type="checkbox"/> 협동조합연합회 <input type="checkbox"/>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input type="checkbox"/> 영농·영어조합법인 <input type="checkbox"/> 농업·어업회사법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인증(지정)유형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input type="checkbox"/> 법인으로 보는 단체 <input type="checkbox"/> 기타(문화단체 등)				
근로자 현황 *현재기준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실적만 인정하며,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별도제출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종전 재정 지원 사업 참여 여부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사업개발비지원 ~ .. .	
		전문인력지원 ~ .. .	
	인증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사업개발비지원 ~ .. .	
		전문인력지원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종복지원 여부					
구 분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합 계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신청내용					
신청인원	전체 신청인원(A)	취약계층 고용계획인원(B)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B/A)		
	명	명	%		
사업내용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 구비서류

<제출서류>

- ①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 ②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③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4호의2서식]
- ④ 다음의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 내용(제출불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의 ID 제출로 갈음)
 -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필수과정' ('21.1. 신설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접수마감일기준 1년 내 기준 e-러닝 이수도 인정)
 -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으로 공식 인증된 수료증)
 -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동의사항>

- ①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 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 ② 기업의 유급근로자 등의 확인을 위해 신청시 4대보험 가입증명 등의 자료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 ③ 근로자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 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 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5년의 범위내에서 지급 제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작성방법

- 1) 전체유급근로자수는 재정지원 사업 신청당시 전체 유급근로자수를 의미
- 2) 사업분야 구분
 -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 3) 최초지원일:
 - 예비사회적기업: 해당사업의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 지원개시일
 -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후 해당사업의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사회적기업 인증 전 예비 자격으로 지원받은 내역도 작성)
-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 예시: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촉진 또는 고용창출지원금을 받거나 받고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재심사)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재심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신청 연차					
예비 사회적기업	부처형	<input type="checkbox"/> 예비 1년차	<input type="checkbox"/> 예비 2년차		
	지역형	<input type="checkbox"/> 예비 1년차	<input type="checkbox"/> 예비 2년차		
사회적기업		<input type="checkbox"/> 인증 1년차	<input type="checkbox"/> 인증 2년차		
<input type="checkbox"/> 인증 3년차					
◆ 신청기업 개요					
기업명		인증(지정)번호			
대표자(주민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 (팩스)	Tel. (Fax.)		
전자메일주소		담당자 (연락처)	성명: (전화:)		
인증(지정)유형	<input type="checkbox"/> 사회서비스 제공형 <input type="checkbox"/> 일자리 제공형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 공헌형(①[], ④[], ⑩[]) <input type="checkbox"/> 혼합형 <input type="checkbox"/> 기타형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지원 약정기간 동안의 실적만 인정하며,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별도제출				
근로자 현황 *현재기준	전체유급근로자수(A) 명	취약계층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비율(B/A) %		
종전 재정 지원 사업 참여 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 .. .	
		사업개발비지원 ~ .. .	
		전문인력지원 ~ .. .	
	인증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 .. .	
		사업개발비지원 ~ .. .	
		전문인력지원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사업성과					
직전 지원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월)
근로자현황 (지원기간) 동안 월평균	전체 근로자수(A)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인원수			
		배정인원	실제 참여인원(B)	취약계층 참여자수(C)	재정지원 인원 비율(B/A)
◆ 신청내용					
신청인원	전체 신청인원(A) 명		취약계층 고용계획인원(B) 명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B/A) %	
사업내용					
□ 중복지원 여부					
구 분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합 계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임금체불 여부					
구 분	임금체불 여부	체불시 체불금액	체불인원	체불기간	청산여부
합 계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계속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 구비서류:

- ①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 ②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③ 유급근로자 명부
- ④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 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 사업에서 5년의 범위내에서 징계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 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작성방법

- 1) 전체유급근로자수는 재정지원 사업 신청당시 전체 유급근로자수를 의미
- 2) 사업분야 구분
 -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 3) 최초지원일:
 - 예비사회적기업: 해당사업의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 지원개시일
 -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후 해당사업의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사회적기업 인증 전 예비 자격으로 지원받은 내역도 작성)
-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 예시: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촉진 또는 고용창출지원금을 받거나 받고 있는 경우
- 7) 사업성과 작성방법
 - 취약계층수 / 전체 참여자: 매월 말일 기준의 인원
 - 세부 사업성과는 필요시 별지작성

【별지 제2호의2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재참여)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재참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신청기업 개요					
기 업 명			인증번호		
대 표 자 (주민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연 락 처 (휴 대 폰)	Tel. ()	담당자	성명:	(e-mail:)	
인증유형	<input type="checkbox"/> 사회서비스 제공형 <input type="checkbox"/> 일자리 제공형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 공헌형(①[], ②[], ③[]) <input type="checkbox"/> 혼합형 <input type="checkbox"/> 기타형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실적만 인정하며,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별도제출				
종전 재정 지원 사업 참여 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¹⁾	지원기간 ²⁾	지원연차 ³⁾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사업개발비지원 ~ .. .	
		전문인력지원 ~ .. .	
	인증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사업개발비지원 ~ .. .	
		전문인력지원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중복지원 여부⁴⁾

구 분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합 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

◆ 임금체불 여부

구 분	임금체불 여부	체불시 체불금액	체불인원	체불기간	청산여부
합 계					

◆ 일자리창출사업 성과⁵⁾

총 지원기간 ⁶⁾	최초 지원시작일	최종 지원종료일	총 지원기간
	.	.	년 월
지원시점기준 ⁷⁾	전체 근로자수 (a)+(b)	자체 고용근로자 수 ①	참여근로자 수 ②
	명	명	명
현재시점기준 ⁸⁾	전체 근로자수 ①	취약계층 수 ②	취약계층 비율 (②/①)
	명	명	%
사업성과 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한 성과물 및 실적을 사업 계획서에 별도 첨부하여 제출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전, 참여 당시 및 현재 근로자 증감 비교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전, 후 임금, 근로자 복지 수준 비교 -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한 경영 성과, 매출액 증대 등 기타 성과물 		

◆ 신청내용

신청인원	전체 신청인원①	취약계층 고용계획인원②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②/①)
	명	명	%
사업명			
사업분야 ¹⁰⁾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구하

❖ 구비서류

<제출서류>

- ①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 ②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③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4호의2서식]
- ④ 다음의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 내용(제출불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의 ID 제출로 갈음)
 -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필수과정' ('21.1. 신설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접수마감일기준 1년 내 기준 e-러닝 이수도 인정)
 -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
(5시간 이상 교육과정으로 공식 인증된 수료증)
 -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동의사항>

- ①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 ② 기업의 유급근로자 등의 확인을 위해 신청시 4대보험 가입증명 등의 자료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 ③ 근로자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 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 사업에서 5년의 범위내에서 지급제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작성방법

- 1) 최초지원일
 - 예비사회적기업: 해당사업의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 지원개시일
 -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후 해당사업의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사회적기업 인증 전 예비 자격으로 지원받은 내역도 작성)
- 2)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 3)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 4)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 해야 합니다
 - * 예시: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촉진 또는 고용창출지원금을 받거나 받고 있는 경우
- 5) 과거 지원받았던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한 사업성과 작성
- 6) 과거 지원받았던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기간 작성
 - * 예시: 최초 지원시작일 2012.3.1., 최종 지원종료일 2017.2.28., 총 지원기간 5년
- 7) 마지막 지원약정을 기준으로 근로자 현황 작성
- 8) 재참여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 현황 작성
- 9) 과거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창출한 사업성과물을 별도자료로 작성 제출
- 10) 사업분야 구분
 - ① 교육 ② 보건 ③ 사회복지 ④ 환경 ⑤ 문화·예술 ⑥ 보육 ⑦ 산림 보전 및 관리 ⑧ 가사 간병 ⑨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 고용서비스 ⑫ 제조 ⑬ 유통 ⑭ 기타

【별지 제3호서식】 사업계획서

(앞쪽)

사업계획서																																																				
◆ 기업개요																																																				
기 업 명				인증(지정)번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인증(지정)유형	<input type="checkbox"/> 사회서비스 제공형 <input type="checkbox"/> 일자리 제공형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 공헌형(①[], ④[]) <input type="checkbox"/> 혼합형 <input type="checkbox"/> 기타형																																																			
◆ 사업계획																																																				
사업내용																																																				
사업장소	<input type="checkbox"/> 시·도 ()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 <input type="checkbox"/> 사업장소 세부내용: ※ 참여근로자는 위 사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사회서비스 제공 계획																																																				
◆ 참여근로자 채용 및 관리 계획																																																				
참여근로자 채용계획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 (기준시점)</th> <th colspan="3">자체근로자</th> <th colspan="3">일자리창출사업</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계</th> <th>일반</th> <th>취약 계층</th> <th>계</th> <th>참여 근로자</th> <th>참여근로자 채용계획</th> </tr> </thead> <tbody> <tr> <td>예비1년</td> <td>명</td> <td>명</td> <td>명</td> <td>-</td> <td>-</td> <td>명</td> <td></td> </tr> <tr> <td>예비2년</td> <td>명</td> <td>명</td> <td>명</td> <td>명</td> <td>명</td> <td>명</td> <td></td> </tr> <tr> <td>인증1년</td> <td>명</td> <td>명</td> <td>명</td> <td>명</td> <td>명</td> <td>명</td> <td></td> </tr> <tr> <td>인증2년</td> <td>명</td> <td>명</td> <td>명</td> <td>명</td> <td>명</td> <td>명</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기준시점)	자체근로자			일자리창출사업			비고	계	일반	취약 계층	계	참여 근로자	참여근로자 채용계획	예비1년	명	명	명	-	-	명		예비2년	명	명	명	명	명	명		인증1년	명	명	명	명	명	명		인증2년	명	명	명	명	명	명	
	구분 (기준시점)	자체근로자			일자리창출사업			비고																																												
		계	일반	취약 계층	계	참여 근로자	참여근로자 채용계획																																													
	예비1년	명	명	명	-	-	명																																													
	예비2년	명	명	명	명	명	명																																													
	인증1년	명	명	명	명	명	명																																													
인증2년	명	명	명	명	명	명																																														

참여근로자 수행업무																	
참여근로자 근로조건	주 근무시간, 월 임금, 기타 근무 조건																
참여근로자 관리계획																	
◆ 사업지속 및 자립가능성																	
목표 매출액	<p style="text-align: right;">원</p> <p>* 전체근로자(일자리창출사업 참여인원 + 자체고용)의 목표매출액</p>																
산출근가 <small>*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small>	<p>ex1) ○ 목표 매출액 : 132,000,000원</p> <p>- 산출근거</p> <p>거래처 납품 : 20개소 X 약 200,000원 X 12월 = 48,000,000원</p> <p>온라인 판매 : 3,000,000원 X 12월 = 36,000,000원</p> <p>오프라인 판매수입 : 4,000,000원 X 12월 = 48,000,000원</p> <p>ex2) 목표 매출액 : 420,000,000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상품분류</th> <th style="text-align: center;">평균단가</th> <th style="text-align: center;">산출근거</th> <th style="text-align: center;">연매출액</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문구류</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X5,000개X12개월</td> <td style="text-align: center;">120,000,0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의류</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00X500개X12개월</td> <td style="text-align: center;">180,000,0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자제품 액세서리 류</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0X2,000개X12개월</td> <td style="text-align: center;">120,000,000원</td> </tr> </tbody> </table>	상품분류	평균단가	산출근거	연매출액	문구류	2,000원	2,000X5,000개X12개월	120,000,000원	의류	30,000원	30,000X500개X12개월	180,000,000원	전자제품 액세서리 류	50,000원	5,000X2,000개X12개월	120,000,000원
상품분류	평균단가	산출근거	연매출액														
문구류	2,000원	2,000X5,000개X12개월	120,000,000원														
의류	30,000원	30,000X500개X12개월	180,000,000원														
전자제품 액세서리 류	50,000원	5,000X2,000개X12개월	120,000,000원														
지속적 수입 확보 방안																	
회계관리의 투명성 확보																	
수익금 사용계획																	
◆ 사업관리 및 향후 계획																	
사업관리방안																	
향후사업계획 (인증계획 포함)																	

* 필요시 별지 작성

【별지 제4호서식】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서(참여자용)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참여자용)

1. 참여자격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이 기업에 근무한 적이 있나요 1-1.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나요 2-1.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의 이름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이 기업에서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 이 기업의 회원(기업의 구성, 운영에 참여하는 회원만 해당)인가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5. 이 기업의 대표자 및 등기 임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 인가요 5-1. 대표자, 등기임원 친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친족 등 참여자격 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스스로 보고하여야 함을 아시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6.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다른기업의 대표 포함)이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7. 현재 취업중인가요 7-1. 이중 취업중인 경우 사업장명과 근로시간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성명 : (서명 또는 인)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이력 조회,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개인정보의 제공: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제공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별지 제4호의2서식】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용)

1. 사업장 참여자격 및 자격유지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참여자격 및 지원요건(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보험료, 임금체불 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사실이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 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급여가 명시 되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 4대보험료 체납이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5. 임금등 체불이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6. 참여근로자중에 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나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6-1. 참여근로자 중 대표자, 등기임원 친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친족 등 참여자격 제한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보고하여야 함을 아시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7.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8. 참여근로자중에 관련기업에서 퇴직한 자가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9. 참여근로자중에 등기임원이나 회원이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한다.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2.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 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 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여부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사업장정보의 제공 :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종복여부, 지원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사업장식별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전 화 번 호 (휴 대 폰)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법 인 등 록 번 호	

【서식 1】 유급근로자 명부(취약계층 증빙서류는 별첨)

연번	성명	성별	생년월일	입사일	퇴사일	취약계층 분류번호	근로계약 기간(주)	월평균 임금 (천원)	일자리 참여여부 ①자체인력 ②일자리(일반) ③전문인력
1	김길동	남	701231	2011.3.1	2020.1.28	5	40	1,200	①자체인력
2	이길동	남	801231	2012.3.1		12-가	40	1,200	②일자리 (일반)
3	홍길순	여	601231	2012.3.1		1, 3	20	700	③전문인력
4	박길순	여	901231	2012.3.1		해당없음	30	900	①자체인력
5									
6									
7									
8									
9									
10									
11									
12									

【취약계층 분류번호】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 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간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 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 다. 「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최초 고용 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종인 자)
 - 마. 노숙인
 -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자. 난민(정부로부터 난민 인정을 받은 자)
 - * 단, 사회서비스대상 취약계층은 위 취약계층 및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학교폭력피해자, 학교밖청소년, 중증질환자 등 포함
 - 차.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은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 등급), 학교폭력 피해자, 학교밖청소년*, 중증질환자 등을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인정
 - 카. 보호종료 아동

【서식2-1】 사회서비스 제공 내역서

사회서비스 제공 내역서

※실적이 없는 난은 미기재, 필요한 경우 별지 작성

※제공 증빙서류 별첨

1.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적만 작성

① 사회서비스 내용(사회서비스 분야는 [별표2] 참조)

제 공 분 야	세 부 내 용
(예시)간병서비스	(예시)지역 주민 대상 간병서비스 제공 ※ 고령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 50% 할인

② 사회서비스 세부내역

(서비스 유형이 무료형, 저렴형, 일반형으로 나뉠 경우 각각에 대해 기재하고, 가격은 일반형을 기준으로 산출)

구분	무료 제공형 ¹⁾		할인 제공형 ²⁾		일반형	계	
	수혜자수 (A)	금액 (a)	수혜자수 (B)	금액 (b)	수혜자수 (C)	수혜자수 (A+B+C)	금액 (a+b)
취약계층							
일반인							
계							

1) (정상 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을 표시), 2) (할인한 금액을 표시)

2. 사회공헌 실적

(생산품을 무료로 제공한 경우 그 내역을 기재, 불특정 다수는 “불특정”으로 기재)

공 헌 내 용	수 혜 인 원	사회공헌 총액
(예시)지역 저소득 아동, 조손 가정 대상 도시락 무료 제공 ※ 고령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 50% 할인	취약계층	정상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을 표시
일반인		
계		

3. 지역 사회공헌 실적 (기타 지역사회 및 주민 대상 사회공헌 내역을 구체적 기재)

(예시)지역 농가 농산물을 원재료로 전량 구매 : 시장가격 이상 책정으로 농산물 판로 개척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72가구 대상 시래기 300톤 3억 상당)

※ 매입가격 : 1kg 당 800원 (시장 평균가격 1kg 당 600원)

【서식2-2】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제공기관	기관명		연락처
	주 소		
수혜기관	기관명		연락처
	주 소		
사회 서비스 내 용	서비스명		
	제공일시		
	수혜자수		
	수혜대상		
	수혜내용		
	환산금액 (세부내역)		
()는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에서는 사회서비스를 받았음을 인정합니다.			
2022년 월 일			
제공기관 :			
대 표 : (인)			
수혜기관 :			
대 표 : (인)			